

오보와 표현의 오기(상)

-신문평의회사례-

I.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사

1. 문학제의 시

데일리 스캐치지는 켈트남 추계문학제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는데 그 가운데 스타링 모스 씨가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는 내용을 실었던, 기사에 의하면 주최측이 모스 씨를 비롯한 유명인에게 문학제에 「청년시대의 애창시」를 내주도록 요청을 하였는데 모스 씨는 주최측에 대해 젊은 시절에 특정한 시를 애창한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서 친구가 쓴 몇 줄의 시를 보냈다. 이 시는 문학제에서 낭독되지 않았는데 데일리 스캐치의 기사에서는 낭독된 것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문학제의 명예회장이 「이렇게 가혹한 시는 본 일도 없다」고 평했다고 보도했다. 회장은 이 기사가 전적으로 사실에 반한 것이며 자신이 평한 것으로 되어있는 구절은 말한 일조차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데일리 스캐치는 기사의 정정도 하지 않았으며 회장의 부인에 대해서도 기사화하지 않았다.

편집장 하워드 프랜치 씨는 이 기사가 통신원에 의해 쓰여진 것이며 통신원을 믿고 게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원은 이에 대해 회장비서가 대기실에 있던 5~6 명의 앞에서 읽은 것으로 회장은 기사내용에 있는 것과 같은 비평을 했다고 주장했다.

평의회는 이 기사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사실무근의 부분도 몇 군데 있다고 지적, 통신원을 비난하고 데일리 스캐치는 입수한 정보의 확인을 위해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평정했다(1964 년).

2. 연금생활자와 숙박료할인

『숙박료할인에 호텔측이 항의, 가짜 연금생활자 횡행』 제하의 기사가 피플 지의 일면에 게재되었다. 이 기사는 노인연금을 받고 있는 것도 아는데 숙박료의 할인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영국의 호텔업자들은 할인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으며 숙박료의 할인은 여행회사들의 술책이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한 여행회사의 총지배인은 피플지에 투서하여 자사에 관한 한 이 기사의 제목은 사실무근이기도 하고 부당하며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피플지의 스튜어트 칸벨 편집장은 여행업자 전부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의 변호사는 신문평의회에 대해 기사에는 편집장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일부 업자가 한 일이라고 쓰고 있지는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편집장은 평의회에 대해 업계의 모두가 이런 부당한 짓을 하고있지 않다는 것은 독자의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일이며 신문은 이러한 전제를 갖고 기사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평의회는 이 기사가 극히 일부의 여행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해야 했었다고 회사측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평정했다. (1966 년)

3. 노동당직원의 급료

노동당본부직원협의회장은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게재된 당본부직원의 급료인상요구가 거부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는 전면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기사에 관해 주의를 준 결과 정정기사가 나오긴 했으나 이 정정기사가 또 잘못되어 있었다. 부정확한 기사를 일면에 쓴 것은 반노동당의 선전이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편집장 로저 우드 씨는 이 의견에 반대하여 기사는 지금까지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부터 입수하여 이를 믿고 지면에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8일이 지난 후 7개 단체의 임금인상 교섭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잘못된 내용을 정정했다.

평의회는 데일리 익스프레스가 두 차례에 걸쳐 부정확한 기사를 쓴 것은 잘못된 처사임을 인정했으나 이 문제에 관한 세 번째 기사에서 정정기사를 쓴 사실을 지적했다. (1962년)

4. 형평을 잃은 표현

에딘버러 공이 청년들에게 수여하는 상에 관해 보도한 기사는 부분적으로 과장하여 비판을 가한 일례이다. 이 기사는 피플 지에 게재된 것으로 이 상이 웃음거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사에서 실례까지 열거되어 「어떤 청년은 용단만드는 것으로 금상을 탔으며 어떤 아가씨는 유행가를 공부하여 동상을 탔다. 그런가 하면 자가제조의 포도주로 금상을 탄 청년도 있다」는 등의 내용이 있으나 그 뒷부분에서는 수상후보자가 4가지 점에서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상을 획득할 수 없으며 「취미오락」은 그 한 항목에 지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있다.

평의회에 제기된 이의는 기사가 사실을 왜곡하여 상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남여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듯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편집장 스튜어트 칸벨 씨는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고 이에 신선명쾌한 논평을 가하는 것이 사의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평의회는 공익에 관한 문제에 관해 논평하는 것은 신문의 권리라고 전제하면서 이 기사의 표현은 형평에 위배되고 있으며 입상에 필요한 조건전반에 관해 독자를 오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964년)

5. 경비원들과 쫓시

이브닝 뉴스지는, 켄트 주의 코범 부락에서는 가로등이 없는 거리를 곤봉을 찬 경비원들이 매일밤 순찰하고 있는데 이는 근방에 야숙하고 있는 50가족의 쫓시가 나쁜 짓을 하거나 부락민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경비원들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암호까지 정해놓고 있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코범 부락의 경비원들은 쫓시를 축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기사내용과 같이 야경, 곤봉, 암호라든가 비밀회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으로 쫓시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기사를 제공한 통신사는 부락민들의 의사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 기사를 냈으며 쫓시측은 부락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여 걱정하고 있었으며 부락안에는 「험악한」 뿌리깊은 반쫓시감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통신사의 기자가 구두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야경의 정보는 부락사람들과 잡담을 하던 중에 안 사실로서 말을 한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평의회는 부락민의 일부 중에는 쫓시에 대해 투쟁할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었을런지는 모르나 기사의 내용과 같은 행동이 진지하게 생각되고 있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판정했다. 평의회는 경비원들과 야경에 관한 이야기를 결부시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상을 주고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1964 년)

6. 경마마에 마약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마약이나, 독이나, 진실이라면 조사가 필요』 제하로 한 마주의 말에 의하면 그 말(마)이 마약이나 독을 마신 것 같으며 마약의 검사를 하여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 우리 나라의 마권업자들은 끝장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경마라는 스포츠를 남겨두고 싶거든 마권을 폐지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기사내용 중에는 「예를 들면 경마장의 보안담당자는 일부 마권업자의 동향을 조사해 왔는지 어떤지 알고싶다」는 내용의 논평까지도 곁들였다.

전국마권취급자협회의 홍보부장은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편집장에 대해 「경마마에 마약을 투여한 책임이. 마권업자 전체에게 있다」는 놀라운 트집에 대해 항의했으나 그 편지의 일부분이 이 기사에 대한 그 밖의 비판과 함께 지면에 나왔을 뿐이었다.

신문측은 그 후 다시 일부의 나이가 적은 암말에게 약을 투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욕심에 얽혀 이러한 역할을 맡은 공범의 마권업자가, 비록 마권업자란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로 업무를 하지않고 있다 할지라도 마약사용이라는 꺼림칙한 이야기가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여기에서 다시 협회와 신문사간에 편지가 오고 가던 끝에 전국마권취급자협회는 신문평의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편집장 오버트 에드워드 씨는 평의회에 대해, 기사의 필자는 정보를 입수하고 마권업관계자의 한 사람이 마약소동재발에 얽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으나 명예훼손의 남용도 있고 해서 좀더 확실한 증거를 포착하기까지는 단정적인 내용을 쓸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필자는 마약사건이 업계를 해치고 있는데도 마권업자는 보고도 본체만체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마권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예훼손의 법률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것을 신문에는 쓸 수 없다는 것이다.

평의회는, 이 기사는 필자가 경마의 장래를 걱정하여 쓴 것이긴 하나 마권업 자체를 공격하기에는 재료부족이라고 지적, 협회측이 제기한 이의를 지지했다. (1906 년)

7. 매수설의 부정을 목살

선(The Sun)지는 한 도료회사가 매수될 것 같다는 소문이 주식시장에 유포되고 있다는 짭막한 기사를 썼으나 그 사흘 전에 당사 중역중의 한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다는 말을 기자와 했었다. 중역은 매수되리라는 이야기가 2 개월 전부터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정했으나 선지는 이러한 중역의 이의제기나 소문을 부정하는 사실은 기사에 실지 않았다.

회사측은 이러한 것들을 묵살한 것은 신문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고 평의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선지의 편집장 R. L. 딘스틸 씨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그 회사의 중역이 소문을 부정하긴 했으나 내용을 낼 때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지않다고 말했다. 신문으로서는 이름도 낼 수 없는 사람이 부정한 것이라면 그다지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중역이 이름을 내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그의 담화를 기사화했을 것이다. 그 후에도 회사매수의 소문에 관한 기사가 다른 신문에 게재되었으나 공식적으로 부정된 일은 한번도 없다』

이에 대해 회사측의 사무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평의회에 제출한 이의서의 사본을 증권거래소에 보냈으므로 이를 소문에 대한 회사측의 공식적인 부정으로 봐도 좋다. 그러나 거래소이사회의 생각으로는 이의신청서의 사본만으로는 주주에게 회사의 상장을 평가시키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허위의 시세가 형성되는 것을 피한다는 상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다.』

평의회는, 매수될 것 같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한 선 지의 기사에는 회사측이 소문을 부정했다는 사실도 썼어야 했다고 평정, 회사측의 이의를 지지했다. (1966 년)

8. 탄항재해

데일리 메일지는 「볼트 10 개를 잠그는 것을 잊어 31 명 사망, 책임자는 두 사람」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 의하면 「두 전공의 태만이 비극의 불씨였다. 두 전공은 안전규칙에 반해 배전반의 뚜껑을 열어둔 채로 시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꽃이 항내의 가스를 폭발시켰다」는 것이었다.

전국탄항노동조합은 평의회에 대해 제목과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재해의 책임자는 두 전공 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추정일 뿐이며 광산감찰부장의 보고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고 다른 데에도 이 두 전공에 못지않은 책임이 있는데 두 전공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편집장 마이클 랜들 씨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완전히 형평에 맞는 기사로서는 환기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도 더 썼어야 했었다고 사료되나 공식보고가 있었다고 해서 조합의 투서와 같이 환기부족이 폭발의 주원인이 되었을리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배전반의 뚜껑을 잠그지 않은 것을 재해의 설명으로 한 것에는 실로 잘못된 바 있다고 인정했다. 평의회는 제목과 기사의 전문이 이름도 모르는 전기공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하게 표현했을 뿐 아니라 사실에도 오해가 있었다고 평정, 이의를 지지했다. (1966 년)

9. 축구협회와 스포츠기자간의 분쟁

축구협회는 1955 년도 영국축구팀의 브라질, 페루, 멕시코, 미국원정에 관한 신문의 보도기준을 둘러싸고 이의를 제기했다. 런던의 신문에 게재된 기사에는 「사실에 오보가 있으며, 진실이 아니며, 말하지도 않은 내용」이 나와있다는 것이었다. 임원에 대한 신문기자의 태도도 당초에는 우호적이었던 것이 「점차 반항적」으로 변했으며 기사는 「솔직한 보도와 논평」에서 「전적으로 무책임」한 것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축구협회의 대표자는 평의회측과 만났으며 그 뒤 일부의 스포츠담당기자가 평의회에 출석했다.

1955 년 5 월 27 일의 데일리 매일 지의 기사에 의하면 영국팀의 주장 밀리 라이트는 최후의 몇 시합에 관해 「국제무대에 처음 나온 젊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내가 책임을 지는 편이 낫겠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제목은 「내가 그만둔다. 밀리 라이트 담」으로 뽑았다. 라이트는 이 담화의 내용은 물론 디즈니랜드에서 말한 것으로 보도된 사실도 함께 부인했다.

평의회는 표현이 잘못되어 있으면 기사전체의 진실성이 희박해지므로 유감이라고 인정했다. 5 월 26 일의 데일리 밀러는 『영군은 당장 돌아가라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미국축구협회는 「미국의 팬들은 약한 팀에는 관심이 없으므로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시합예정을 취소하는 편이 낫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비참한 원정」이 「굴욕의 결말」을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은 멕시코에서 영국팀이 「처참한 패배」로 끝난 모습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구경온 미국축구협회임원 15 명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영국축구협회는 미국축구협회의 편지를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멕시코의 시합을 보러 간 임원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적혀있었다.

한편 데일리 데레그라프는 「팀의 운영이 서툴렀든가 아니면 축구협회의 이익을 위해 선수들의 생활이라든가 능력이 희생되었든가의 어느 한쪽일 것」이라고 논평했다. 평의회는 이 논평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인정했다.

축구협회는 수년전까지 신문과의 관계가 극히 좋았다고 밝혔으며 신문측에서도 이를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기자는 양쪽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순식의 스포츠담당기자가 임원들의 견해에 동조한 데 반해 젊은 기자들은 협회를 비난하는 입장을 취하자 임원들이 이에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감정의 대립이 격화된 것은 명백하지만 전적으로 무책임하다는 비난은 확증이 없다. 둘째, 기사중에 표현의 잘못이 있는 것은 유감이나 그것을 이유로 신문전체에 책임을 들리는 축구협회의 방식도 온당하지 못하다. 셋째, 칭찬받는 축구협회와 일부 스포츠기자와의 사이에 의견의 차이와 오해가 생긴데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이는 경기를 위해서나 신문계를 위해서나 바람직스러운 일이 못된다. 넷째, 평의회는 이러한 이유로 하여 축구협회와 스포츠 기자단의 대표가 회동하여 화해하도록 권고한다.

그 후에 나온 축구협회의 기관지 FA 뉴스에서 협회는 평의회 발표가 요령부득의 불만스러운 것이라고 선언하면서도 평의회 의견에 따라 스포츠기자단과 만나는 것에

찬성했으나 기자단은 평의회와 같이 결정권이 없는 단체이므로 신문경영자나 편집책임자와 만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1960 년)

10. 경제난의 오보

이브닝 스텐다드는 경제난에서 한 빙고 홀 회사가 급속하게 업무를 확장했으며 회사의 한 중역이 1 년 이내에 주식을 공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를 읽고 1 천 파운드를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한 남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기사에는 이미 메카사 및 그 밖의 곳으로부터도 매수의 신청이 있었다고 써여져 있었는데 이를 포함하여 기사에는 진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편집장 알즈 윈터 씨는 메카사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기사를 쓴 담당기자를 엄중 문책했으나 회사중역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를 일일이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이의신청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데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기자는 회사중역의 한 사람이 메카 사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으며 메카사의 한 중역으로부터는 투자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인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의신청인은 텐텐다드지가 투자로 손해를 본 액수를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평의회는 이의의 내용이 신문사가 부정확하고 확증이 없는 기사를 썼다는 것으로 신문사측이 잘못을 인정하여 사죄를 했으므로 보상요구에 관해 심의결과를 쓸 필요는 없다고 판정했다.(1967 년)

11. 멜크삼 준자치도시의 편향보도이의

멜크삼 준자치도시참사회는 웨스턴 데일리 프레스 지가 참사회에 대해서 대중이 그릇된 인상을 갖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예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첫째는 64 세의 노처, 남편과 별거. 사회, 과대가족으로 단정」 제하의 기사로 시영주택에 딸 외에 다섯 손자까지 동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참사회가 말하고 있어 40 년간 같이 살아온 처가 별거를 각오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참사회는 서기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사실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이 부인은 시영주택에 살고는 있으나 따로 한 채의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사회는 남편과 함께 그곳으로 옮겨 살았으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딸과 다섯 손자는 작은 침실에서 함께 기거하고 있고 최근까지 또 하나의 딸이 두 아이를 데리고 동거하고 있었다. 또 이 부인은 고양이를 다섯 마리나 키우고 있다.」

둘째는, 『아홉 채의 집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미망인』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이 부인은 파기명령이 내린 13 채의 집 가운데 아홉 채를 갖고 있는 주인인데 공중위생검사관이 파기명령을 받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며 검사관이 이 집이 기초가 썩고 습기가 심하기는 하나 파기하라고 하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참사회측의 이야기로는 주인이 집을 새로 고쳐세우고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파기명령을 한 것이며 위생검사관이 이 집에 내려진 파기명령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한 것을 부인이

들었다는 등의 기사를 내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로 이 집이 형편없이 낡았으므로 파기해야 한다고 참사회에 보고한 것은 바로 그 검사관이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B 씨 아직껏 증액요구」 제하의 기사로, B 씨는 참사회가 강제수용령에 의해 매수한 토지의 보상금증액을 요구하며 한달 전부터 교섭을 벌여왔으나 결론을 내기위해 참사회와의 회담내용을 기록해 줄 속기사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참사회측은 이 건은 강제수용이 아니고 B 씨가 동의한 금액으로 참사회가 매입했는데, 뒤늦게 증액요구를 하기 때문에 참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의 세가지 기사는 참사회에 대한 편향보도의 예로서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시민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었다고 참사회의 서기는 말했다.

웨스턴 데일리 프레스 지는 이를 사실로 취급, 「멜크삼 참사회원가운데 신문에 반감을 갖는 사람이 많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반감은 저희 신문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신문에 대한 반감이다. 유감스럽다고 한 것은 신문은 참사회의 최선의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편집장 에릭 브라이스 씨는 평의회에 대해 동지가 참사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려 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부정했다.

『첫째의 예에 관해 기자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데 대해서는 그 뜻을 모르겠다. 주택위원장은 이에 대한 담화의 발표를 거부하고 있다. 기사는 전부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둘째번의 예에 관해서는, 위생검사관의 말이 오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직후 그 사정을 설명하는 기사를 썼다.

이의가 제기된 진정한 이유는 참사회가 화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꺼리는 문제를 신문이 공표했기 때문이다.』

평의회는 아래와 같이 판정했다.

「신문은 참사회의 활동에 대해 명백히 비판적이긴 하나 이유만 있으면 지방행정당국을 비판하는 것은 신문의 역할의 일부이다. 그러나 사실을 정확하게 잡기 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의 예에 관해 보면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더라면 이 기사는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주택위원장에게 사실을 밝힐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를 거부했으므로 신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위생검사관에 관한 건에서는 파기의 목적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 정정기사가 나와있으나 중대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검사관이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셋째번의 예에서는 참사회가 강제수용령을 발동하여 매입한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투쟁이라고 쓰고 700 파운드의 금액이 부당하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강제수용은 아니었고 B 씨는 이 가격에 동의하여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

이의를 전체적으로 볼 때 지당한 것이었다는 것이 평의회 의견이다. (1966 년)

12. 회사가 정보제공을 거부

어떤 회사가 스트라트포드 익스프레스 지에 실린 기사가 「전적으로 부정확」 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기사는 빈 나프타린 탱크가 폭발하여 3 명의 공원이 피해없이 겨우 빠져나왔고 20 인의 소방대가 30 분 동안 진화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폭발도 없었고 화재는 공장의 소방반에서 10 분만에 진화시켰고 소방대는 그 후에 도착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주간 아이반 W. 스미스 씨는 기자들이 회사의 책임자들로부터 공식적인 말을 들으려고 갖은 노력을 했으나 거절당했으며 공장에 들어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고 경영자측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어려워 경찰, 소방, 종업원의 말을 듣고 기사를 썼다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평의회에 대해 기자들과 만날 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또 화재는 공익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공건물로부터도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고 공원의 안전에 관해서는 적절한 예방조치가 강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평의회는 만일 회사가 신문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면 부정확하다는 이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장의 화재는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것이므로 결코 사사일 수 없으며 공장측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평의회는 회사의 태도가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1963 년)

13. 「사외비」의 도난사건

스트레탐 뉴스는 『도난은 극비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지방의 한 회사가 어떤 도난사건을 모조리 극비취급을 하여 기자가 두 차례에 걸쳐 취재하러 갔는데도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는 기사를 냈다.

신문이 나오고 9 일이 지난 뒤 회사는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것은 사원이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고 설명했다. 금고가 폭파되고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것은 사원이었다는 기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회사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신문기사의 출처는 런던경시청이었다.

평의회는 신문이 정보수집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회사에 취재하러 갔으므로 도난의 공공적 중요성을 이해하여 회사측은 말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1962 년)

14. 유녀(幼女)의 죽음

한 아버지는 그라스공 데일리 레코드지의 기자가 억지로 집에 들어와 어린 딸아이들의 죽음에 관한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기사화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 기사에는 말하지도 않은 내용이 섞여있을 뿐 아니라 아들이 사건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아들은 며칠 전부터 친척집에 가있었으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 기자는 가까운 사진관에 가서 아버지에게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허락을 받았다고 속이고 갖고 갔다.

기자의 말에 의하면 사진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다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사진사측은 이를 부인, 허락을 받았느냐고 두 번이나 물었는데 분명히 기자가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기자는 아버지와는 약 15 분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으나 아버지 쪽에서는 이를 부인했다. 한편 기자는 아들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편집장 알렉스 리딘루 씨는 평의회에 대해 이 기사와 관련하여 담당기자를 꾸짖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억지로 집에 들어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자의 말이 맞다고 말했다.

평의회는, 신문이 중대한 점에서 사실에 반한다고 기자 자신이 인정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비난하고 저작권의 소유자인 가족의 허락을 받지않고 사진을 가져간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1962 년)

15. 하지도 않은 인터뷰를 기사화

월바헨프턴 원더런즈 풋볼 클럽은 데일리 스케치지가 낸 클럽임원과 인터뷰는 전적으로 날조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인터뷰는 전혀 행해진 일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클럽이 감독을 해고함으로써 일어난 것인데 신문은 당연히 그 내막을 알고 싶어했으나 임원들은 개인적으로 신문에 말하지 않기로 했다. 취재하러 간 기자는 정보를 얻기위해 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다. 한 임원의 사무실에서 그 기자는 차후에 정보를 얻기로 약속받았으나 지금은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다고 증용받았다. 다음날 뉴스 오브 더 월드지는 이 임원을 포함한 두 사람이 최후까지 해고에 반대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수일 후 뉴스 오브 더 월드의 기사가 데일리 스케치지에 실렸는데 그 내용은 그 임원과 만나 감독을 지지하는 이유를 담은 담화의 형식이였다. 데일리 스케치의 기자는 뉴스 오브 더 월드지의 기사는 읽지는 않았으나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밝히고 임원과의 담화는 그 다음날 아침 전화로 취재했다고 했다. 기자는 또한 임원이 말해준 데 대해서는 의외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에게 별도의 전화로 도청케 하고 기록도 시켰으나 별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에 보존시키지는 않았다고 했다.

임원측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한 일이 없으며 전화로 통화했다는 그 시간에 자신은 사무실에 있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평의회는 이를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인터뷰는 기자가 조작한 것으로 판정, 기자는 처벌을 받았다. (1966 년)